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유동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2
------------	-------

발의년월일 : 2013. 8. .

발 의 자 : 유동균, 송병길, 차재홍,
오진아, 한일용, 박영길, 조영덕,
마동환

1. 제안이유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 나. 구청장은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팔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라.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함(안 제7조).
- 마.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매우 큰 구민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공기관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제정근거

「국어기본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시행) 제4조 등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필요

※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필요(2013.8.27~2013.9.1 실시)
- 나. 예산조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 필요(기 실시, 공보과-804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쓸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본청·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옥외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

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